

##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부과의 논의와 우리의 추진과제

권 오\*/한상현\*\*

###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우선 전자상거래의 현황과 미국, OECD,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한 국제적 논의 동향을 고찰하고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부과의 측면을 내국세와 관세로 세분하여 최근 논의된 국제회의 내용과 국내의 현상을 토대로 분석하면서 전자상거래 부문에 과세를 부과하는데 따르는 본질적인 문제를 기초로 내국세와 관세 부과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서 우리의 정책적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 1. 서론

1990년대 초반만 해도 미래의 꿈으로나 그려지던 전자상거래(EC; Electronic Commerce)가 인터넷의 발전과 더불어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가 폭증하면서 세계 각국들의 주요 관심사는 세금의 부과문제가 되었다.

전자상거래 과세문제는 국내의 경우에는 부가세와 소비세가 주요사항이며 국제간에는 관세가 주요사항이 되고 있는 바, 관세부문은 이미 1996년 2월에 모든 정보기술 상품은 2000년까지 관세를 철폐한다는 WTO의 정보기술협정(ITA)이 타결됨으로 인해 대부분 해결되고 있으나 부가세나 소비세의 문제는 아직도 입장이 서로 상충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정부도 이미 관세부과 대상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였던 인터넷상의 컴퓨터SW, 영화 등 무형의 상품거래는 잠정적으로 무관세하기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에도 국제적 논의와 환경변화가 예상되므로 내국세 신설금지와 무관세화에 대한 여타 국가의 반응을 비롯 과세부과의 기술적 가능성 등을 기초로 입장을 재정립하여야 한다. 특히 미국 등은 전자상거래 관련설비에 대한 추가적인 무관세화와 인터넷 교역의 무관세화를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므로 우리나라도 과세권 확보차원에서 EC의 과세부과에 대한 국제적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EC에 관한 합리적 과세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本考에서는 우선 전자상거래의 현황과 국제적 논의동향을 고찰하여 EC의 거래원리를 명백히 하는 동시에 EC에 대한 과세부과의 측면을 내국세와 관세로 세분하여 국제회의 내용과 국내의 현상을 토대로 전자상거래부문에 과세를 부과하는데 따르는 본질적인 문제를 기초로 내국세와 관세부과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면서 우리의 정책적 추진과제를 구

\* 한성대학교 사회과학부 무역학전공 부교수

\*\* 강남대학교 경제통상학부 무역학전공 겸임교수

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 II. 전자상거래의 발전의 전제 조건과 국제적 동향

### 2.1 전자상거래의 의의와 형태

#### 2.1.1 전자상거래의 의의

전자상거래는 EDI의 제반기술 이외에 E-Mail, 파일전송, 전자자금이체(EFT), Image시스템, 음성사서함, Bar Code, Video Messaging 등 컴퓨터 과학과 통신기술의 결합을 복합적으로 통합하여 전략경영에 활용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방법으로,<sup>1)</sup> 가상공간인 인터넷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고 파는 상거래를 총칭한 것이다.

#### 2.1.2 전자상거래의 형태

전자상거래는 참여대상에 따라 거래의 주체별로 기관과 소비자간(BTC)의 거래형태와 기관과 기관간(BTB)의 거래형태로 구분되는데,<sup>2)</sup> 전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행하는 기업과 개인(소비자)간의 EC<sup>3)</sup>이며, 후자는 주로 EDI를 채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비즈니스의 EC이며,<sup>4)</sup> 네트워크를 통해 지속적으로 상호 거래하는 형태에 따라 전자조직( electronic hierarchy)과 전자시장(electronic market)의 형태가 있다.<sup>5)</sup>

1) 南 光, UNCITRAL과 電子商去來, 通商法律, 法務部, 1997. 8. p.67.

2) Harrington, L. Early Perspectives on Electronic Commerce, The McKinsey Quarterly, Number 3 1995, p.78.; 金裕燦·洪範敎, 電子商去來 時代의 租稅政策, 조세정책연구원 정책보고서, 1998. p.67.

3) 長谷川俊明, 英文契約100의Q&A(26), 國際商事法務, Vol.26, No.5, 1998, p.546.

4) 原田保·寺本義也, 인터넷時代의電子取引革命, 東洋經濟新報社, 1996, 7. p.5.

### 2.2 전자상거래 구현의 전제요건과 발전현황

#### 2.2.1 전자상거래 구현의 전제요건

첫째, EC는 컴퓨터시스템이라는 “기계 대 기계”의 네트워크 관계에서 거래가 형성된다.<sup>6)</sup> 그래서 컴퓨터 등의 고장이나 불법행위 등 정보사고의 발생시 기계에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관련 당사자중에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며, 네트워크를 이용한 거래의 특성상 암호화(cryptography)기술과 같은 특별한 기밀성에 대한 고려가 요구한다.<sup>7)</sup>

둘째, 종래 상거래는 인감증명, 자필서명 그밖에 신분증명 등으로 본인이 진실됨을 확인할 수 있으나 익명성을 근거로 한 EC에서는 ID번호가 누출되거나 電子署名이 위조될 경우 그에 따른 책임문제가 발생되므로 거래당사자의 신분을 인증할 수 있는 인프라 및 “전자인증시스템”이라는 네트워크상의 시스템이 필요하다.<sup>8)</sup>

셋째, EC는 종래 상거래와는 달리 거래를 일으키는 당사자가 지역적 제한을 받지 않는 범세계성을 가지고 있다.<sup>9)</sup> 따라서 환율, 배달(delivery), 지불방식, 거래물품의 품질, 환불, 문화적 차이 등에 있어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발생한다.

5) Malone, T. ·Yates, J. ·Benjamin, R. The Logic of Electronic Markets, Harvard Business Review 1989 (May-June), p.345.

6) 內藤順也, コンピュータ・ネットワークの法律問題, (上), 國際商事法務, Vol.24, No.6, 1996, pp.573-584

7) Taher Elgamal, Credit Card Payment Applications over the Internet, <http://home.netscape.com/newsref/std/credit.html>, July 14, 1995.

8) 小笹俊一, ECがわかるキーワード, Computopia, 1995, 12, p.45.; 石黒憲彦, 電子商去來~日本再生の條件, 日刊工業新聞社, 1996, 3. p.202.

9) Mason-Jones, R. & D.R. Towill, Information Enrichment : designing the supply chain for competitive advantage, Supply Chain Management, Vo.2, No.4, 1997, p.138.

넷째, EC는 상품의 선택과 주문이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신속성은 있으나,<sup>10)</sup> 주문자가 주문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경우 제한을 받으므로 대다수 거래자인 소비자의 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다. 따라서 정보화시대에 더욱 위축되고 있는 소비자 보호문제가 심각하다.<sup>11)</sup>

다섯째, EC는 디지털 형태이므로 거래당사자가 거래내용을 유형적으로 서면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고 복제가 가능하며 위조가 매우 쉽다. 따라서 안정성과 신뢰성의 확보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자료를 거래에 대한 증거로서 사용하기 위한 보조적인 보안요소들이 필요하다.<sup>12)</sup>

일곱째, EC에서는 가상공간을 통해 전자적 의사표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약성립상의 문제 발생이 예상된다.<sup>13)</sup> 즉, 서면과 서명을 기본체제로 이루어졌던 기존의 법체계가 과연 전자적 의사표시에 의한 EC에도 적용되며 적합한 해석기준이 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발생된다.

### 2.2.2 전자상거래의 발전 현황

전자상거래는 인터넷의 보급속도 만큼이나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그 규모와 이용자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실제로 전자상거래 규모는 이를 추산하는 기관마다 차이가 있다. 그것은 EC가 아직 태동단계이고 대부분의 기업이 전통적인 거래와 EC를 병행하고 있기 때문이다.<sup>14)</sup> 일반적으로 EC의 규모는

전세계적으로 1998년 대비 향후 5년간 연간 69%씩 증가하여 2003년에는 1조 불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sup>15)</sup>

〈표 2-1〉 전자상거래 시장규모 전망

(단위 : 백만불)

구분	1998	1999	2003
전세계	77,000	340,000	1,070,000
미국	58,709	215,677	541,423
한국	354	2,168	9,613

자료: WEFA, 전자상거래 시장기획분석, 1999, 2.

EC는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본은 상거래의 EC활용비용이 그다지 높지 않지만, 미국은 기업수준에서 약 50% 이상의 미국기업이 인터넷에 의한 EC를 행하는 등 EC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sup>16)</sup> 우리 나라의 전자상거래 규모는 1997년 모두 63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규모는 1999년 3백44억 원, 2000년 6백13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사이버몰 수(400개)는 미국(45만개)의 0.1% 미만에 불과하나 최근 외국회사와의 제휴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몇 년 안에 10배 이상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표 2-2〉 국내 사이버몰의 성장 전망

(단위 : 개, 억원)

	1998	1999	2002
사이버몰 수	400	1,000-5,000	5,000
매출액	150	350-1,000	2,100-2,721

자료 : 한국정보산업연합회, 1999.

10) 編輯部, 企業間ネット連携で大競争時代を生き抜け, コンピュートピア, 1996, 5, p.41.

11) ECのシステム構築のキー・テクノロジ, Nikkei Computer, 1995, 10, 2, p.98.

12) 上里讓・小口日出彦, エレクトロニクスコ・マース, Nikkei Computer, 1995, 10, 2, p.97.

13) Calza, Francesco & Renato Passaro, EDI and Network and Logistics management at Unilever-Sagit, Supply Chain Management, Vol.2, No.4, 1997, p.158.

14) 동아일보, 1999, 5, 21.

15) 財政經濟部 税制室, 전자상거래 과세문제 검토 및 대응 방안, 회의자료, 1999, 11, 13, p.11.

16) 日本經濟新聞, 1997, 9, 29, 朝刊.

## 2.3 전자상거래 발전을 위한 국제 사회의 동향

최근 WTO 등 국제기구가 중심이 되어 가상 공간에서의 새로운 경제·무역 질서를 확립키 위한 다자간 규범 제정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고 선진국도 민·관 공조를 통해 다각적인 전자상거래 지원정책을 수립·시행하면서 신기술 개발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 2.3.1 법과 제도의 정비

#### 2.3.1.1 국제 전자상거래 규범의 제정추진

WTO와 OECD 등 국제기구는 EC에 대한 무관세화와 정부규제 완화를 위한 국제규범제정을 추진중에 있다. 즉, WTO는 1999년 말에 미국의 시애틀에서 개최된 제3차 각료회의에서 EC에 대한 관세·비관세장벽 철폐 등을 검토하였으며, OECD는 1998년 10월에 개최된 전자상거래 각료회의에서 소비자 보호, 개인정보 보호, 전자인증 등 3개 각료선언을 채택한데 이어 고위실무회의(10월 12일~13일)를 통해 전자인증의 법적 효력 보장 문제 등을 논의했다.<sup>17)</sup>

#### 2.3.1.2 선진국의 관련법 제정 및 기술인력 양성

미국은 제3차 WTO 각료회의 개최국으로 2000년부터 시작된 신 다자간협상 의제에 EC를 포함하려고 전자상거래 촉진을 위한 각국 국내법 정비, 인터넷 국제표준화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미정부 권고를 1999년 2월에 WTO에 제출했다. 또한 EC발전과 경제성장의 원동력되는 정보기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인력 양성에 적극 나설 것임을 선언했다.<sup>18)</sup> 일본은 EC관련

WTO협상에 대비한 정부측 입장을 정립했고 1999년 4월 은행·우체국·기업간 공동결제시스템 구축을 위해 후지은행 등 278개 기관으로 구성된 “일본인터넷결제추진협의회”를 구성했다.

### 2.3.2 기술의 공동개발과 민간 협의채널 구축

미·일은 1999년 2월 EC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안보기술개발 등 차세대 인터넷연구를 공동추진하기로 합의했고, 일·EU는 무역금융EDI, EC용 IC카드 등의 분야에서 민·관 공동프로젝트를 추진기로 합의했다. IBM(미)·후지쓰(일)·베텔스만(독) 등 선진국 업체는 각 정부와 WTO에 EC에 관한 재계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EC분야에서 세계최대규모의 국제회의인 “전자상거래에 관한 국제비즈니스대화”회의를 1999년 프랑스에서 개최하여 민간협의기구인 “GBDe”를 결성했으며, 미국의 AT&T, 일본의 전신전화(NTT), 독일의 도이치텔레콤 등 주요 통신업체는 차세대 통신규약 개발단체인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IPv6) 포럼”을 1999년에 창설했다.

한편 한·미·일·중·호 등 20개국은 아·태 지역 민간 기업간 EC 활성화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아·태전자거래협의회”를 결성할 예정이며 영국의 정보기술 업체인 3Com Europe·네델란드의 ING은행·벨기에의 CERN 연구소 등은 관세·조세제도, 인프라 문제 등 EC 저해요인에 대처하기 위해 “유럽인터넷연합(a4ie)”을 1998년 5월에 결성했다.

17) 협력국 교역협력과, 국제사회의 전자상거래 기반 확충 동향, 국제관세정보 99-55, 1999, 7, 30.

18) 1996년 6월 20일 상무부의 디지털경제(Digital Economy) 관련보고서.

### III.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부과의 국제적 논의

#### 3.1 전자상거래 과세부과에 대한 일반논의

##### 3.1.1 OECD

OECD에 의한 전자정보의 교환 등 개별이슈에 대한 기본적인 논의는 이미 1980년대부터 진행되었으나 EC에 대한 논의는 1994년 이후 본격화되었다. 현재까지 OECD에서는 3개의 권고와 1개의 선언을 채택하고 있는데<sup>19)</sup>, 초기는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이동의 자유 등에 중점을 두었으나 최근에는 무역, 경쟁, 정부조달, 조세 등 국제경제활동 측면에 대한 연구분석과 논의가 증대되고 있다.<sup>20)</sup> 즉, 1997년 11월 19일~21일까지 핀란드에서 전자상거래 민·관 국제회의를 개최하여 EC 확산 10대 원칙을 결정하였으며, 1998년 10월에 개최된 캐나다 오타와 각료회의에서는 그 동안의 전자상거래 논의사항을 종합하고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한편, 1999년 10월 12일에서 13일까지 각국정부·민간업계·국제기구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타와 회의의 후속 실무회담으로 파리포럼이 개최되어 소비자보호, 정보인프라 확충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sup>21)</sup> 이 포럼에서 OECD 측은 특히 전자상거래시 소비세, 소득세 과세권 배분기준, 전자상거래 소득의 성격구분 등에 대

해 2001년까지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임을 밝혔으며 EU대표는 EC에 대해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한 합의에 따라 EU의 부가가치세(VAT)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 3.1.2 미국

###### 3.1.2.1 전자상거래에 대한 무관세원칙 제시

미국은 1990년대 이후 컴퓨터 및 인터넷 사용 급증으로 인한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가능성을 감안,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있다. 즉, 행정부는 1997년 7월 1일 전자상거래 이용의 민간주도 원칙, 세금 및 관세 관련 정부 규제 자체 등을 골자로 한 지구촌 전자상거래에 대한 기본계획(A Framework for Global Electronic Commerce)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인터넷을 무관세지대로 선정하고 기존의 판매세 외에 추가적인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등 EC에 대한 일련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의회는 무관세화 외에도 내국세부과를 금지하기 위한 법안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1997년 3월 콕스(Cox)·와이든(Wyden) 하원위원의 발의에 따라 EC시 판매세 외에 소비세·소득세 등 추가세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인터넷면세법안(Internet Tax Freedom Act)”을 1998년 6월에 만장일치로 승인했는데, 이 면세법은 향후 3년 동안 인터넷접속료에 세금부과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sup>22)</sup> 상원도 1998년 10월 유사 법안을 승인하고 2001년 10월까지 3년간 전자상거래 과세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결정하는 등 EC 활성화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 3.1.2.2 미국의 전자상거래 비과세 논란 동향

최근 미국의 전자상거래 업계는 소비세 등이

19) 1980년 Privacy Guideline채택, 1985년 Declaration on transborder data flow채택, 1992년 Security Guideline채택, 1997년 암호화 지침 및 “전자상거래-정부의 기회와 도전”보고서 발간.

20) 박윤준, 전자상거래와 조세(II), 월간 조세 115호, 1997. 12. p.68.

21) 협력국 교역협력과, OECD의 전자상거래 포럼개최 결과, 국제관세정보 99-70, 1999. 10. 30.

22) <http://www.dongduk.ac.kr/ecomm/kisdi>

정수되지 않아 정부로부터 막대한 보조금(98년 4억 3,000만불)을 지급받는 효과를 보고 있다. 이로 인해 최근 주·지방 정부는 전자상거래 면세조치로 인한 재정수입 감소를 우려, 과세를 주장하면서 논란이 본격화되고 있다.<sup>23)</sup>

즉, 州정부 및 지방정부 대표들은 전자상거래 비과세가 주 세입의 약 49%를 차지하는 특별판매세 징수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비과세 조치를 재고할 것을 행정부·의회에 건의했다.<sup>24)</sup> 이에 정보통신 업계는 과세를 실시할 경우 전자상거래 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상품가격도 상승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면서 반박하고 있으며, 반면 통신판매 등 일반 유통업계는 전자상거래 비과세 조치로 업계 존립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sup>25)</sup>

이에 정부는 의회내 하원의 주도로 정보통신 업계와 주·지방정부 대표들 등 총19인으로 구성된 “전자상거래자문위(ACEC)”를 발족시켜 향후 전자상거래 과세여부 문제를 논의토록 하고 ACEC가 2000년 4월 제출할 “전자상거래 과세 정책 최종보고서”를 토대로 적절한 과세시기와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그러나 1999년 6월 21일에 개최된 ACEC회의는 주·지방정부의 세율과 판매세 부과대상 품목 등이 상이한데다 각계의 입장 차이가 커서 난항을 겪었다.

### 3.2.3 유럽연합(EU)

EU는 그 동안 인터넷 상거래를 포함한 글로벌한 전자 비즈니스의 규모가 급증하면서 이에 대해 어떻게 세금을 부과할 것인가의 문제를 놓고

고 논란을 거듭해왔다.

이에 미국의 공식 발표 후, 독일과 유럽위원회(CEC)가 공동으로 미국의 정책에 대응하여 1997년 7월 6일부터 독일 본(Bonn)에서 열린 범세계정보망(Global Information Network)에 관한 EU각료회의<sup>26)</sup>를 마치면서, 미국입장에 동조하여 인터넷을 정부의 간섭 없이 민간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촉구하는 내용의 “본 선언(Bonn Declaration)”을 채택하였다.

본 선언에서는 EU를 중심으로 한 정보망 구축과 전자 상거래에 관한 일반 입장을 밝힌 것으로 무관세화 및 내국세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 표명은 유보되었다.<sup>27)</sup> 다만 EU는 적절한 과세기법을 찾아낼 때까지는 무관세를 수용한다(stand still)는 원칙을 고수하면서, EC에서 통용되는 차별적인 조세제도는 피하는 입장이다.

EU는 이처럼 미국의 무관세 원칙에 기본적으로 합의하고 있기는 하지만 일부 국가들이 반발이 있고, 부가가치세가 전체 세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미국의 원칙에 무조건 동조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OECD 자료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의 부가가치세 비율이 5%를 하회하는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스웨덴 25%를 비롯하여 여타 유럽국가들은 상당히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up>28)</sup> 결국 EU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금의 부재가 실물 거래를 하는 여타 EU 사업자들과 비교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들어 부가가치세 적용을 결정하게 되었다.<sup>29)</sup>

23) 협력국 교역협력과, 최근 미국내 전자상거래 과세관련 논란동향, 국제관세정보 99-50, 1999, 7, 27.

24) John H. Jackson and William J. Davey, Legal Problems of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West Publishing Co., 1986, p.365.

25) <http://www.whitehouse.gov/WH/New/Commerce/message.html>.

26) 본 회의에는 EU 회원국, 유럽自由貿易聯合(EFTA)소속 회원국 그리고 일부 동유럽국가 등 유럽 29개국을 비롯하여 초청 받은 미국, 일본, 캐나다, 러시아 등 총 33 개국이 참여하였는데, 유럽 및 G8 국가로 참석대상을 제한, 경제적 선진국들이 온라인 경제마저도 선점하려는 의도를 역력히 보여주었다.

27) <http://www.howpc.com.howpc/199709>

28)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전자상거래 국제논의 동향과 우리의 대응방안, 1998, 8, 19.

### 3.2.4 개도국

현재 전자상거래 과세부과에 대 개도국은 선진국들의 입장에 달리 완강하게 “노(no)”의 입장이다. 특히 1999년도의 이번 WTO 회담에서는 인도와 파키스탄, 페루, 멕시코, 아르헨티나, 트리니다드 토바고, 자메이카 등 7개국은 인터넷상의 전자상거래 무관세화의 공식합의에 거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개도국들은 선진기술로 무장한 미국의 인터넷기업들이 무차별적으로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 앞에 아무런 대책이 없으므로 EC가 가져다주는 편리함을 인정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미국 인터넷 기업들은 ① 개발도상국들이 이미 그들의 발전을 위해 EC를 활용하고 있으므로 EC에 대한 자유로운 환경유지가 중요하다는 점 ② 전자적 전송에 대한 관세부과 및 징수는 기술적으로도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관세 면제를 추진하는 것이 이들 나라에게도 결국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sup>30)</sup> 따라서 온라인 거래에 대한 무관세화가 세계 각국, 특히 개발도상국에 미칠 영향은 좀더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겠으나, 현 단계에서 무관세가 개발도상국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하여는 현재 부정적인 영향과 긍정적인 영향이 병존되고 있는 실정이다.

### 3.2.5 평가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전자상거래 과세에 대한 입장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의 무관세 관행을 영구화하자는 입장과 무관세의 영구화는 각국의 세수 및 재정정책에 큰 영

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더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개발도상국들의 입장이 대립되고 있다. 그러나 일정 기간동안 잠정적으로 무관세 관행을 연장할 필요성에 대하여는 대부분의 국가가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의 국제회의에서 무관세 관행의 연장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 3.2 내국세관련 논의

### 3.2.1. OECD와 전자상거래 과세기준

OECD는 각국의 상이한 입장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보다 일반적인 선언적인 내용만 언급하고 있다. 즉, EC에서도 전통적 과세원칙 적용되며, 소비세는 소비지과세원칙을 분명히 하고 디지털상품의 공급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고 있다. 또한 소득세와 관련 고정사업장(Website), 조세관할권, 사용자 소득 등에 대한 명확한 국제적 합의가 필요함을 인정하면서 재정주권존중, 이중과세, 무과세 방지를 위한 과세원칙을 장려하고 있는 실정이다.<sup>31)</sup> OECD에 있어 전자상거래에 대한 조세문제는 1997년 이후 OECD 재정위원회(CFA)와 산하작업반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재정위 산하 작업그룹인 ECTA(Electronic Commerce Tax Administration)가 작성한 “전자상거래 과세기준 보고서”를 오타와 각료회의에 보고하였고, 오타와 각료회의에서는 위 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전자상거래 과세기준”을 승인·공표했다.<sup>32)</sup>

### 3.2.2 오타와 각료회의시 합의사항

오타와 각료회의에서는 ① 납세자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전자상거래 기술을 활용 ② 전자상

29) EU says global Internet services should be taxed, Reuters, 1998. 6. 17.: E-Commerce Challenges to Tax Authorities and Taxpayers, I-Ways, First Quarter 1998, pp.46-53.

30) WTO, WT/GC/M/48.

31) <http://co.kr/databank/onfo98-72>.

32) 財政經濟部 稅制室, 前掲資料, p.2.

거래에 대해서도 중립성(neutrality), 효율성(efficiency), 효과성 및 공평성(effectiveness and fairness), 명확성 및 간소성(certainty and simplicity) 및 유연성(flexibility) 등 일반적 과세원칙을 유지 ③ OECD회원국, 기업 및 비기업 납세자단체 등과의 협조강화 등의 전자상거래 과세원칙이 합의되었다.<sup>33)</sup> 특히 조세부과와 관련하여 오타와 회의에서는 상품구매의 종류에 상관없이 컴퓨터를 사용한 시간에 비례하여 세금을 징수하자는 "bit tax"의 신설의견이 제시되었지만 실효성이 부족하여 무산되었다.<sup>34)</sup>

### 3.2.3 오타와 이후 논의경과

오타와 이후 논의경과에서 두드러진 것은 논의체제의 구축이다. 즉, 비회원국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기술적 측면의 지원을 얻기 위한 자문기구로서 5개의 Technical Advisory Group을 결정(1999년 1월)하였다. 또한 후술하는 바와 같이 소비세, 소득세 등 분야에서 다소간의 진전이 있었으며, 여타 조세행정, 소득성격구분 등의 분야는 TAG에서 논의가 진행중이나 작업반(working party) 단계의 구체화된 논의는 없는 실정이다. 대부분 과세의 논의를 2001년 초까지 종결할 계획이므로 소비세분야 논의는 시한 내 종결이 가능하나, 다만, 소득세 과세권 배분기준에 관한 논의는 장기화될 전망이다.

### 3.2.4 OECD 파리포럼의 평가

1999년 10월 12일에서 13일까지 파리에서 개최된 OECD포럼에서 OECD측은 전자상거래시 소비세, 소득세 과세권 배분기준, 전자상거래 소

득의 성격구분 등에 대해 2001년까지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임을 밝혔다. 특히 소비세의 소비지의 정의를 기업 소비자의 경우 본점 소재지로, 개인 소비자는 주소지로 한다는데 의견접근을 보았다. 또한 EU 대표는 전자상거래에 대해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한 합의에 따라 EU의 부가가치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sup>35)</sup> 이번 OECD의 전자상거래 포럼은 오타와 전자상거래 각료회의에서 합의된 전자상거래 구축을 위한 행동계획에 따라 정부 및 국제기구 등의 전자상거래의 추진 현황에 대한 중간 점검의 일환으로서 개최된 것으로, 전자상거래 규제에 대한 정부 개입과 후진국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3.3 관세관련 논의

### 3.3.1 관세관련 국제적 논의

#### 3.3.1.1 On-Line거래

국제적으로 On-Line에 의한 인터넷상의 무형화된 정보에 대해서는 관세의 부과를 금지하고 있다. 그것은 EC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경우 거래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고 현재 다른 분야도 관세를 낮추는 추세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외국으로부터 컴퓨터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거나 정보서비스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기술적으로도 거래의 포착이 불가능하여 관세부과가 곤란한 실정이다.

#### 3.3.1.2 Off-Line거래

오프라인거래의 경우 재화의 통관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자국제품의 전세계적인 경쟁력우위를 바탕으로 온라인 거래에 대

33) OECD, 1998, Electronic Commerce: Taxation Framework Conditions, DAFFE/CFA(98)38/REV3.

34) 자세한 것은 Lue Soete and Kamp Karin, The Bit Tax : The Case for further research, Working Paper, University of Maastricht, 1996., 6. 12.

35) 협력국 교역협력과, 전기자료.



해 관세를 부과하지 말자는 입장이며, 캐나다, 일본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에 동조하고 있다.<sup>36)</sup> 그러나 개도국은 국내업계의 낮은 경쟁력으로 무관세가 선진국제품의 수입증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WTO는 1998년 5월 제2차 각료회의에서 1999년 11월 제3차 각료회의시 재검토할 것을 조건으로 전자전송에 대한 현재의 무관세관행을 지속하기로 선언문<sup>37)</sup>을 통해 결정한 바 있다.<sup>38)</sup>

### 3.3.2 우리 나라 현행 전자상거래 관세정책과 부과실태

#### 3.3.2.1 거래형태에 따른 관세과세방법

##### ㉞ 유형의 상품거래(off-line goods)

이 유형은 계약 등 상거래 절차는 인터넷을 통하되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물리적 운송이 뒤따르는 거래로, 운송형태는 주로 특급택송이나 우편물의 형태이다. 이 경우는 일반 수입물품의 관세부과 절차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sup>39)</sup>

##### ㉟ 무형의 상품거래(on-line goods)

이 유형은 물품의 운송(delivery)까지도 인터넷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로, 전자신호의 형태로 이동가능한 컴퓨터 S/W, 음악, 영상물, 오락물, 전자출판물, 그리고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되는 금융서비스, 회계, 법률, 기술 등 자문, 여행정보 등이 속한다. 이 경우는 전자신호일 뿐 물품이

아니므로 현행 관세법상 관세부과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정부는 컴퓨터SW, 전자출판, 영화, 음악 등을 인터넷으로 주문하더라도 유체물(필름, CD)로 수입되는 경우 현행대로 관세를 부과하지만 인터넷으로 전송되는 경우 잠정적으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현재 구체적인 행동지침 및 법률안이 마련되지 않은 본 선언보다 미국의 법안에 초점을 두고 있다. 즉, 미국주장의 무관세분야는 인터넷으로 거래가 가능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서비스 분야이며, 자동차와 같은 물리적 상품은 제외된다. 그런데 우리 정부정책은 정보영역은 계속 무관세 분야로 지정하되, 인터넷 자유무역지대론의 핵심 대상인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이 디스켓이나 필름, CD 등에 수록되어 수입되는 경우에 한해 관세를 부과한다는 입장이며 미국과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들 내용이 물리적 형태를 갖춘 물건으로 이동하지 않고 인터넷상에서 정보교환형태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무관세 처리할 방침이다.<sup>40)</sup>

온라인으로 제공될 수 있는 재화에 대한 우리나라의 관세부과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3-1〉 현행 관세부과의 현황

무관세대상	현행 수입형태	관세부과여부	
		현행거래	인터넷거래
디지털신호형태 - 컴퓨터 S/W - 전자출판물	디스켓에 수록	무세(0%)	무관세
	인공위성 전송	무관세	
영화	필름 등에 수록	종량세 ₩2,040/m	무관세
음악	음반(CD)에 수록	8%	무관세

36) U.S., Japan Open Doors To Tariff-Free E-Commerce. NewsBytes, 1998. 5. 18.; Japan, U.S. Announce Agreement On Electronic Commerce.' Nihon Keijai Shimbun, 1998. 5. 15.

37) "We also declare that Members will continue their current practice of not imposing customs duties on electronic transmissions".

38) 협력국 교역협력과, 전자상거래에 관한 미국정부 실무그룹 1차 연차보고서, 국제관세정보 99-18, 1999. 3. 23.

39) 관세청, 인터넷(전자상거래)에 따른 통관대책, 1999. 11. 13. p.1.

40) 이는 미국에서 무관세 품목에 포함시키지도 않은 부분에 대한 사전 처방안처럼 보이지만, 향후 미국이 추가적인 무관세화 추진 계획에서 물리적 운송이 따르는 거래까지 무관세 대상으로 확대할 경우를 대비한 대응책으로 보인다.

**3.3.2.2 전자상거래 우편물과 특급택송화물의 반입실태**

우편물 통관실적(1998)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이 경우 통관우체국은 서울 국제우체국(서울 양천구 목5동 905-6) 등 20개 우체국이며, 우편물의 수령은 면세 또는 과세결정(세관)→ 수취인 주소지 배달(우체국)→ 제세수납(수취인→배달원)→ 우편물수령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특급택송화물(1998)의 경우는 현재 10여 개 특송업체에서 특송 물품을 처리하고 있으며, 1999년 현재 전년대비 40%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표 3-2〉 국제 우편물 통관실적

(단위 : 천건)

반입	면세	과세	과세		
			현장과세	목록과세	일반과세
12,733 (100%)	12,674 (99.5%)	59 (0.5%)	13	19	27

〈표 3-3〉 특급택송화물 통관실적

(단위 : 천건, 백만원)

B/L통관		목록통관		간이통관		일반통관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7	-	609	16	106	20	89	47	821	83

**3.3.2.3 현행 전자상거래 국제우편물의 통관 범위**

㉞ 국제우편물 통관의 개요

이는 해외에 거주하는 친지나 거래회사에서 송부해 주는 물품 및 인터넷 등 통신을 통하여 대금을 지불하고 반입하는 우편물(서신은 제외)에 대한 통관을 말하는데, 해외친지 등이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기증하는 물품은 우편물을 받는 사람이 미리 세금을 준비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우편제도가 서로간의 통신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정금액(10만원) 이하의 물품은 관세를 면세해 주고 있다.<sup>41)</sup>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러한 우편물품의 면세통관제도를 악용하여 통관이 불가능한 물품이나 선물이 아닌 물품, 판매목적의 고가물품을 우편 반입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세관은 통관우체국을 지정하여 국제우편물을 집중통관하고 있으며, X-RAY 등을 이용 현품검사를 실시하여 면세대상물품, 정식신고대상우편물 및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 등으로 구분·처리하고 있다.<sup>42)</sup>

㉟ 과세와 면세

우편물에 의한 통관대상중 ① 국내거주자에게 기증되는 물품으로서 총 과세가격 10만원 상당액 이하의 물품 ② 과세가격 미화 250불 이하의 물품으로서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등은 면세받을 수 있으며,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은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① 전자상거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대금을 지

불한 물품 ② 수증물품으로서 과세가격 1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③ 견품으로 과세가격 미화 250불을 초과하는 우편물 등은 관세법 및 내국세 관련법에서 정하는 관세 및 내국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41) www.customs.go.kr/2traveler/2post

42) 관세청 특수통관과, 국제우편물, 보도자료, 2000, 2.8.

## IV. 전자상거래 과세부과의 제 문제와 우리의 추진과제

### 4.1 전자상거래 과세의 본질적 문제

전자상거래에는 기존 법체계로 해결할 수 없는 것 중의 하나가 과세분야인데, EC의 특성으로 과세분야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 4.1.1 과세행정상의 문제

이것은 거래당사자의 신원확인 어려움, 거래의 암호화·원격조정 등으로 거래추적의 어려움, 과세점(taxing point)<sup>43)</sup>의 상실 등과 같이 주로 인터넷의 기술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로,<sup>44)</sup> 과세당국이 인터넷을 통한 거래행위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하여,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것을 어렵게 하여 조세의 부과 및 징수에 곤란을 초래한다.

##### 4.1.1.1 신원파악과 소득추적 및 세무조사의 어려움

EC는 가상공간에서 행해지므로 그 거래의 특성상 거래당사자의 신원확인이 전통적인 상거래와 비교하여 매우 어렵다. 또한 EC는 거래의 암호화, 전송경로 세분화, 원격조정과 접속, 변환장치(translator)의 사용에 따른 거래내용 삭제 및 탈 매개현상 등으로 과세당국이 거래를 추적하는 것이 매우 힘들어 기존 과세체계의 일대변혁을 요구하고 있다.

43) 과세점이란 세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는 장소를 지칭하는 것으로 전통적 상거래에서는 극장, 식당 등의 사업장을 과세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44) 김유찬·이성봉, 한국전산원, 전자상거래와 조세, 1998. 5. 28.; 이성봉·김유찬, 전자상거래 조세관련 국제논의와 대응방안, 통상법률 23호, 1998. 10. p.126.

##### 4.1.1.2 과세시점 결정 및 증거능력자료의 확보 곤란

EC에 대한 실지 매출규모나 대금결제금액이 현행 전자상거래 시스템상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어 세원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즉, 실제 판매된 상품의 종류나 수량이 전자적으로 기록, 보존되지 않으며 가상공간의 거래를 관찰하는 것도 불가능하므로 매출규모의 파악이 안 된다. 더욱이 국외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업체의 경우 판매상품의 구입자료나 고객에게 상품을 택배한 자료 등의 확보도 불가능한 실정이다. 특히 현행 기술상 단순한 E-Mail의 발송과 주문 및 주요 소프트웨어의 전송판매를 구분할 방법이 없다.<sup>45)</sup>

##### 4.1.1.3 과세대상자 결정의 어려움

EC는 도매·소매업 등에서 중간유통단계가 생략되는 현상(disintermediation)의 발생으로 과세점의 포착이 어려워 과세에 애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즉, EC에서는 가상공간이 사업장이 되고 각종 거래내역이 전자화되므로 거래의 추적과 세원관리가 힘들다.

##### 4.1.1.4 과세권의 행사곤란

전자상거래 업계에서는 다양한 옵션(신용카드, 무통장입금 등)을 제공하나 우리 나라 거주자는 대부분 신용카드에 의한 결제만 가능하다.<sup>46)</sup> 대금결제금액의 경우 대부분 카드결제된 예도 불구하고 현행 외국환거래규정상 국외 전자상거래업체(즉, 신용카드 해외가맹점)가 국내 거주자에게 대금 청구하는 금액이 해당 업체별로 파악되지 않는다. 매출금액의 파악이 가능하

45) 財政經濟部 稅制室, 전개자료, p.11.

46) 個人納稅局 附加價值稅課, 電子商去來 稅源管理方案, 1999. 11. p.14.

더라도 EC의 특성상 그 과세권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강제적인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곤란한 실정이다.

#### 4.1.2 실정법상의 문제

이것은 부가가치세, 소득세, 관세 등과 같은 구체적 과세유형과 관련된 것으로, 기존의 조세 규범들이 지리적 국경의 존재나 물리적 장소개념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주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에 대한 과세문제가 논의대상이 되고 있는데 전자는 무형재화에 대하여는 국제간 비과세논의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후자는 주로 국제조세문제와 관련되어 미국과 기타국가간의 의견이 일치되고 있지 않다. 여기에 대한 주요 논의 사항은 직접거래,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 자회사 등과 관련된 문제들이 논의되고 있다.<sup>47)</sup> 우리 정부는 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조항을 강화하고 업체들의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하는 방안과 함께 세무당국이 인터넷이용자 명단을 확보, 사용료 송금내역을 파악해 과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송금내역 등을 파악하려면 많은 시간이 들어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입장이다.

## 4.2 내국세와 관련된 문제

### 4.2.1 소비세와 관련된 문제

#### 4.2.1.1 과세장소 문제

EC에서는 서비스 공급자가 소비지국에 어떤 가시적인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고도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현재 징세편의상 공급장소(사업장)에서 부과, 징수하는 과세방법이 전자상거래에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sup>48)</sup> 이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간의 소비

세과세에 있어서 공급장소보다 소비지에서 과세한다는 원칙에 합의하였다. 이점에 대해 파리포럼에서는 소비자의 정의에 대해 기업 및 비사업기관 소비자의 경우는 본점 소재지이며, 개인소비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in principle) 주소지로 하되, 주소지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는 청구지 또는 결제신용카드 발행지를 주소로 추정한다고 논의되었으며, 징수방안은 개인 소비자거래에 대해 국외사업자 등록의무화 방안과 결제금융기관 원천징수방안으로 압축되고 있다.

#### 4.2.1.2 재화·서비스의 구분문제

EC에서는 종래에 우편주문으로 공급되던 신문, S/W, CD 등이 디지털 형식으로 온라인 전송이 가능하다. 그런데 부가세법상 재화로 정의되기 위해서는 물리적 목적물과 운송수단이 존재하여야 하지만, 디지털정보는 이런 점들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재화와 서비스의 구분이 점점 애매해지고 있다. 그리고 인터넷과 새로운 통신기술이 여러 가지 서비스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간 유형의 분류(classification)를 곤란하게 하고 있다.

### 4.2.2 소득세와 관련된 문제

고정사업장이나 거주지 등 물리적 공간을 기준으로 하던 기존 소득세개념은 EC라는 새로운 현상에 직면해 변화될 수밖에 없다. 특히 소득세를 소득이 발생하는 나라(원천지국)가 부과해야 할지, 거주국이 거둬들여야 할지의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sup>49)</sup>

#### 4.2.2.1 거주지국 결정과 소득의 성격문제

EC 특성상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개설시 사용

47) <http://co.kr/databank/onfo98-72>.

48) 財政經濟部 稅制室, 전제자료, p.11.

49) 동아일보, 1999. 5. 21.

한 사업장 주소의 진실성을 확인하기가 힘들며, 인터넷상 법인의 설립이 매우 용이하며 납세자 관리의 측면에서 신원확인 및 결정이 어렵다. 또한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전자상거래 사업장을 조세회피지역으로 옮기는 것이 용이하다. 한편, 한국의 인터넷 사용자가 컴퓨터 소프트웨어나 디지털영화를 컴퓨터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고 미국의 판매업자에게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그 소득이 사용자 소득인지 사업 소득인지 여부가 불투명하다. 사업소득은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원천지국에서 비과세 한다.

#### 4.2.2.2 고정사업장의 정의와 소득의 귀속문제

EC는 사업장을 외국에 두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주문을 받고 우편으로 물건만 보내주면 되기 때문에 기존 稅制에서 장소(고정사업장)의 개념을 완전히 무너뜨리므로 소득세를 걷을 방법이 없어져 버리게 된다. 따라서 EC와 관련하여 서버상의 웹사이트가 고정사업장<sup>50)</sup>의 일반적 요건을 충족하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한편 EC는 전통적인 의미의 지점이 없어서 고정사업장의 소득결정시 활용될 수 있는 본·지점간의 거래 파악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전자상거래의 과세목적으로 과연 전통적인 의미의 개념이 적합한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기업에 대한 과세로 이제까지 국세청은 기업의 본사를 대상으로 세금을 징수했지만 인터넷상에서 기업의 존재는 더 이상 지리학적으로 분류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 4.3 관세와 관련된 문제

### 4.3.1 거래수단별 과세차별의 문제

주문은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지나 재화의 이동은 전통적인 상거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오프라인 거래의 경우에는 통관시에 관세부과가 가능하므로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급증하는 소매품의 거래와 관련하여 관세행정력이 보장되어야 할 필요성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존 상거래에서 관세부과대상이던 재화가 인터넷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경우 현재 이와 같은 온라인 거래는 관세부과대상인 재화의 수입에 해당되는지가 불분명하고 또 재화라 하여도 관세율표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으므로 거래수단별 과세차별의 문제가 생긴다.

### 4.3.2 대상과 범위설정의 문제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일부의 논란의 제외하고 원칙적으로는 모두 온라인에 의한 무형의 상품거래는 무관세하며, 오프라인에 의한 유형거래는 일반 수입물품의 관세부과 절차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원칙이 마련되어 있다. 문제는 인터넷을 통하여 거래되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하여 무관세화를 주장하는데 있어 구체적인 대상과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즉, 단순히 인터넷을 통한 주문 및 지급결제는 기존의 신용카드 등으로 해도 면세를 한다는 의미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주문, 배달, 결제 중에서 한 부문이라도 인터넷을 이용하면 인터넷 상거래에 포함되는 것인지 그 범위에 대한 국가간 이해가 첨예하고 있다.

### 4.3.3 관세수입상의 문제

EC에서 인터넷을 통한 상품주문이 늘어나게

50) OECD모델조세협약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수행되는 고정된 사업장소(fixed place of business)'를 고정사업장이라 보며 관리장소, 지점, 사무소, 공장, 작업장, 광산 등이 포함되고 있다.

되면 그 결과 기존매체를 통한 거래를 EC가 급속히 대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되면 관세수입 역시 급속히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온라인 거래에 대한 무관세는 이런 경향을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인도의 경우 국가재정수입의 18%를 관세수입에서 챙기고 있으므로 EC가 점차 발달하면서 재정수입이 줄지 않을까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 따라서 아직까지도 많은 개도국의 나라들이 EC에 따른 관세를 국가주요 수입원의 하나로 의지하고 있고 이를 쉽게 포기하지 않으려 하고 있어 미국 등의 선진국들과 마찰요인이 되고 있다.

## 4.4 우리의 향후 정책적 추진과제

### 4.4.1 내국세 부문

첫째, 전자상거래 과세방안 정립을 위한 각종 국제회의에서 전자상거래 수요국인 우리나라의 경제적 이해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국제규범이 정립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현행 법체계에 EU에서 최근 변경된 공급장소의 개념을 도입하여 전자상거래(오프라인 서비스)에 대한 과세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제조세 및 조세행정 분야는 국제논의 결과와 현행 국내 법체계를 비교하며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둘째, EC의 증가에 대비하여 기존의 과세제도의 기본원칙이 인터넷을 통한 거래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국내의 조세제도 및 행정을 바꾸어 나아가야 한다. 우리 나라의 부가가치세 제도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지향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의 과세대상에 수입서비스를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일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EC를 통하여 수입되는 용역에 대하여 사업자에게는 대리납부 제도가 적용되도록

하되 개인의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제도를 활용하며 사업장이 없는 국외사업자가 국내에 일정규모 이상의 매출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EC로 판매한 외국기업체의 판매대금을 신용카드의 해외사용내역 분류를 통해 파악하는 방법도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장기적 관리방안으로 전자상거래 전담계의 신설이 요망된다.

셋째, 소득세 및 국제조세 분야는 향후 OECD도 고정사업장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원천과세를 하는 방안으로 원천지국 과세권의 확대 주장이 보다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바, 이 방안이 우리 나라의 과세권 확보에도 도움이 되므로 이를 적극 지지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전자상거래 관련 조세문제 해결의 핵심적 과제는 인터넷을 통한 거래사실, 거래내용 및 당사자의 확인이라고 볼 수 있으며 나아가서 과세당국은 납세의무자의 포착, 과세표준 파악 및 불성실신고자 색출 등을 위해 과세자료를 효과적으로 적기에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sup>51)</sup>

다섯째,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거주지국이 보유하는 사업자의 신원 및 등록정보, 매출처 별 거래내용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의 거주지국 과세당국에 제공하여 국제간에 공동으로 과세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과세의 실효성 확보에 유리할 것이므로 무엇보다도 부가가치세의 징수를 위한 국제적 협조 메커니즘을 개발하여야 한다.

### 4.4.2 관세부문

첫째, 우리 정부는 이미 인터넷상의 컴퓨터 SW 등 무형의 상품거래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에도 국제적 논의와 환경변화가 예상되므로 다른 국가의 반응을 비롯 향후 관세부과의 기술적 가능

51) 金裕燦·洪範敎, 前掲論文, p.67.

성 등을 파악해 입장을 재정립해야 한다.

둘째, 유형물품의 경우 일반수입물품과 동일한 통관절차를 거치므로 기본적으로 통관과 세금징수에 문제가 없다. 다만, 현재 소액물품면세의 경우 기증물품에 대해서만 면세토록 하고 있으나, 인터넷을 통하여 구입한 물품이 우편물, 특급택송화물 등의 형태로 수입될 때 유상구입 물품인지 무상의 기증물품인지 구별하기가 어려우나, 2000년 관세법 개정(안)에 소액(10만원)의 물품에 대하여 유상 및 무상여부를 가리지 않고 면세 처리할 수 있도록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소액물품의 면세제도를 악용하여 사용에 공하거나 반복적으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대책을 수립하여 불필요한 외화낭비를 억제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는 디지털상품에 대해서는 무관세인 현 입장을 재검토하고 외국의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무관세여부 및 대상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 동안 인터넷상거래에 대한 과세문제가 크게 부각되지 않은 이유는 거래 규모가 작았다는 점 외에, 수출입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거래규모의 정확한 파악이 어려웠던 점 때문이므로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를 위해서는 거래대금의 결제과정을 추적, 과세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각국과의 협력체제 구축으로 무관세 규범제정 논의에 참여하여야 한다. 즉, 미국 등은 전자상거래 관련 설비에 대한 추가적인 무관세화와 인터넷 교역의 무관세화를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아시아권 국가들과 협력체제 구축(외무부, 통상산업부)과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 아시아권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무관세화에 대한 국제규범 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ASEAN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방안 강구(협

의체 구성 또는 ASEAN+한국·중국·일본 통상장관회의 등을 이용)하여야 한다.

## V. 結論

본 研究는 EC의 특질과 국제적논의 동향을 고찰하는 동시에 내국세와 관세를 중심으로 한 전자상거래 과세부과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우리의 향후 추진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명하였다. 본 연구는 EC의 거래원리를 명백히 하고 이를 실거래에 적용하고자 할 경우 과세문제에 대한 국제적 논의의 조명과 우리의 대응방안을 정책적으로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紙面의 제약으로 인하여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문제점과 대응책을 제시했기 때문에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대응책이 제시되어야 하는바,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정부는 전자상거래 과세부과에 대해 OECD나 WTO 등 국제 기구들의 회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논의동향에 대응하여야 하며, 국제기구들에서 논의되는 전자상거래 과세부과에 대한 국제규범이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립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너무 조급한 대처나 지연대처보다는 다른 국가의 반응을 비롯 향후 과세부과의 기술적 가능성 등을 파악해 이를 기초로 입장을 재정립하는 능동적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또한 각 부처들은 조속한 시일 내에 기존의 과세제도의 원칙이 EC에도 적용되도록 국내의 조세와 관세제도·법 및 행정 등을 대폭 개정하거나 부합하도록 신설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무관세 관행은 온라인거래의 과세부과가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으

나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는 관세부과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향후 EC과세에 대응하도록 거래대금의 결제과정을 추적, 과세하는 방안도 세밀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각국과의 협력체제 구축으로 과세규범제정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제적인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 맞추어 해외의 법제 동향을 조기에 수용하여 국내법과 국제상거래법규의 일치를 도모하고 국제적인 공조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 참고문헌

- 個人納稅局 附加價值稅課, 電子商去來 稅源管理 方案, 1999. 11.
- 관세청, 인터넷(전자상거래)에 따른 통관대책, 1999. 11. 13.
- 관세청 특수통관과, 국제우편물, 보도자료, 2000. 2. 8.
- 金裕燦·洪範教, 電子商去來 時代의 租稅政策, 조세정책연구원 정책보고서 98-08, 1998. 12.
- 南 光, UNCITRAL과 電子商去來, 通商法律, 法務部, 1997. 8.
- 박윤준, 전자상거래와 조세(II), 월간 조세 115호, 1997. 12.
- 上里讓·小口日出彦, エレクトロニツクコ・マ-ス, Nikkei Computer, 1995. 10. 2.
- 石黑憲彦, 電子商去來~日本再生の條件, 日刊工業新聞社, 1996. 3.
- 小笹俊一, ECがわかるキーワード, Computopia, 1995. 12.
-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전자상거래 국제논의 동향과 우리의 대응방안, 1998. 8. 19.
- 原田保·寺本義也, インターネット時代の電子取引革命, 東洋經濟新報社, 1996. 7.
- 이성봉·김유찬, 전자상거래 조세관련 국제논의와 대응방안, 통상법률 23호, 1998. 10.
- 日本經濟新聞, 1997, 9, 29, 朝刊.
- 長谷川俊明, 英文契約100のQ&A(26), 國際商事法務, Vol.26, No.5, 1998.
- 財政經濟部 稅制室, 전자상거래 과세문제 검토 및 대응방안, 회의자료, 1999. 11. 13.
- 編輯部, 企業間ネット連携で大競争時代を生き抜け, コンピコートピア, 1996. 5.
- 협력국 교역협력과, OECD의 전자상거래 포럼 개최 결과, 국제관세정보 99-70, 1999. 10. 30.
- \_\_\_\_\_, 국제사회의 전자상거래 기반 확충 동향, 국제관세정보 99-55, 1999. 7. 30.
- \_\_\_\_\_, 전자상거래에 관한 미국정부 실무그룹 1차 연차보고서, 국제관세정보, 1999. 3.
- \_\_\_\_\_, 최근 미국내 전자상거래 과세관련 논란동향, 국제관세정보 99-50, 1999. 7. 27.
- Calza, Francesco & Renato Passaro, EDI and Network and Logistics management at Unilever-Sagit, Supply Chain Management, Vol.2, No.4, 1997.
- E-Commerce Challenges to Tax Authorities and Taxpayers, I-Ways, First Quarter 1998.
- EU syas global Internet services should be taxed, Reuters, 1998. 6. 17.
- Japan, U.S. Announce Agreement On Electronic Commerce, Nihon Keijai Shimbun, 1998.



5. 15.

Lue Soete and Kamp Karin, The Bit Tax :  
The Case for futher research, Working  
Paper, University of Maastricht, 1996. 6.  
12.

Mason-Jones, R. & D.R. Towill, Information  
Enrichment : designing the supply chain  
for competitive advantage, Supply Chain  
Management, Vo.2, No.4, 1997.

OECD, 1998, Electronic Commerce: Taxation  
Framework Conditions, DAFFE/CFA(98)  
38/REV3.

Taher Elgamal, Credit Card Payment Applica-  
tions over the Internet, [http://home.  
netscape.com/newsref/std/credit.html](http://home.netscape.com/newsref/std/credit.html), July  
14, 1995.

U.S., Japan Open Doors To Tariff-Free  
E-Commerce, NewsBytes, 1998. 5. 18.

[www.customs.go.kr/2traveler/2post](http://www.customs.go.kr/2traveler/2post)

[www.dongduk.ac.kr/ecomm/kisdi](http://www.dongduk.ac.kr/ecomm/kisdi)

[www.whitehouse.gov/WH/New/Commerce/mes  
sage.html](http://www.whitehouse.gov/WH/New/Commerce/mes<br/>sage.html).

## A Study on the Discussion and Responsive Priorities about Taxation and Customs on the Electronic Commerce

O, Kwon\*/Sang-Hyun Han\*\*

### Abstract

We live in a society in which existing legal frameworks are constantly challenged by technological advancements. This creates a need to constantly update and adapt the way.

This new technology constitutes a brand new route for the exchange of goods and services that has yet to be fully examined. Whereas much has been written on how the information superhighway affects legal issues, such as substantial questions have yet to be answered in regards to how this new trade route will be treated by various laws of taxation and customs and our policies.

Because electronic commerce, is not bound by physical geography provides a fundamentally new way of conducting commercial transactions, this paper analyzes how electronic commerce will be affected by the computer networks, with particular attention to existing international frameworks for taxes and tariffs systems, investigates the reviews and consequences that the electronic commerce environment presents to traditional precepts of taxation and customs.

---

\* College of Social Science, Han-Sung University.

\*\* Dept. of Economics and Commerce, Kang-Nam University.